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02-725-7105 forr2018@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참여연대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 · 정책과제’ 정책자료 발표

날 짜 2015. 5. 26. (별첨제외 총 9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발표 안전사회 등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 15개 정책과제 제안 20대 국회는 잘못된 입법 바로 잡고, 실패한 정책 책임 물어야

1.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 정강자 · 하태훈)는 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오늘(5/26, 목)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 · 정책과제” 정책자료(이하 정책자료)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 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2.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그 다섯 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예 착수해야 한다.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알이 밝혀내야 한다.

3. 한편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하는 5월 30일(월) 오전 11시 반 국회정문 앞에서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국회 운영과 관련된 5대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6월에는 정책자료 전달을 위해 각 정당의 원내 지도부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끝.

- 붙임 1 :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 · 정책과제 목록
- 붙임 2 : 정책자료 발간취지문
- 별첨 1 :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 · 정책과제” 정책자료

□ 붙임 1 :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 · 정책과제 목록

I.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 입법과제1. 중단 없는 진상규명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 입법과제2.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 처리
- 입법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 입법과제4. 산업재해 · 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입법과제5.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 입법과제6.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클래스액션 Class Action)법」 제정
- 입법과제7.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해 책임을 강화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 입법과제8.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과제

- 입법과제1.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등 개정
- 입법과제2.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 입법과제3.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 입법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입법과제5.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 입법과제6. 비판 의견이나 감정표현까지 처벌하는 「모욕죄」 폐지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 입법과제1. 참정권 확대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 입법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 입법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 입법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 입법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 입법과제6. 청원제도 개선과 회의 공개 등 「국회법」 개정
- 입법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

정

입법과제8.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과제9.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과제10.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 개정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 · 「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입법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입법과제3.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심의 실질화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입법과제4. 국가장학금 · 학자금대출제도 개선 위한 「장학재단법」 등 개정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과제2.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과제3.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입법과제4. 파산 · 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파산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 「단

통법」 개정

입법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위한 「학교보건법」 · 「사행산업통합 감독법」 등 개정

입법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입법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VII.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입법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과제4.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입법과제5. 신고인 지위와 권리 강화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입법과제6.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하도급법」 등 개정

입법과제7.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입법과제8.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입법과제9.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입법과제10.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입법과제11.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입법과제12.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

입법과제2. 국가 책임 보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과제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입법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 「기초연금법」 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과제6. 소득세제 누진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입법과제8.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제정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 입법과제1.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 입법과제2.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 개정
- 입법과제3. 군 인권 보호를 위한 「군인권보호관설치법」 제정
- 입법과제4.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하는 「해외파병제한법」 제정
- 입법과제5.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 입법과제6.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X. 정책과제 (청문회/국정조사 등)

- 정책과제1. ‘어버이연합게이트’ 국정조사/청문회
- 정책과제2.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국정조사/청문회
- 정책과제3. 교육부의 지방교육예산 위법편성에 대한 국정조사
- 정책과제4. 분식회계와 부실관리 의혹 규명 위한 대우조선해양사태 국정조사
- 정책과제5.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 정책과제6. 근거 없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 정책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
- 정책과제8. KF-X 개발 결정과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 정책과제9. 천안함 침몰에 대한 초당파적 국정조사 실시
- 정책과제10.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견제
- 정책과제11.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 반입금지 등을 위한 <한미SOFA> 개정
- 정책과제12.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
- 정책과제13. 위헌적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결의
- 정책과제14. 안보교육 실태 조사 및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 정책과제15.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 붙임 2 :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발간취지문

20대 국회에 바랍니다.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19대 국회가 무능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국민들이 전략적 선택으로 입법 권력을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의 위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수기로 전략했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밀어붙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전횡과 횡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제 3당으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함께 국회에서 실종된 정치의 복원,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주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정책과제임에도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처리되지도 못했던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국정방향의 대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정치의 공간이었던, 그리고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는 문턱 높았던 국회 스스로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할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등 9대 분야의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20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도 시급합니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예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알이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국민의 청원권

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이 제대로 심사되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소위 회의의 내용도 모두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회의 방청 제약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 앞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위한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외면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안한 다섯 개의 우선 과제를 비롯한 모두 84개의 입법 · 정책과제를 각 정당들이 채택하여 20대 국회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제 정당들이 국민에게 열려 있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 5. 26.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 · 정강자 · 하태훈